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단지관리 및 공단 임대사무 권한을 위탁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“오창과학산업단지(공단 임대 사무 포함) 관리 권한” 신설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지원과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 · 청주지방산업단지 · 현도지방산업단지 · 부용지방산업단지 · 대소산업단지 · 대풍지방산업단지 · 오창과학산업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	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별표】

민간위탁사무

현행				개정안	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 지원과	5	○ 산업단지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 법률	기업 지원과	5	○ 산업단지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 법률
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	제30조 제31조	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	제30조 제31조
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· 대소산업단지	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대소산업단지	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· 대풍지방산업 단지	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대풍지방산업 단지	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					· 오창과학산업 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	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	

관계 법령 발췌

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】

제30조 (관리권자등)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
2.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
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지방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
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 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.

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

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.

제31조 (산업단지관리공단등)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"관리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(이하 "관리공단등"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
3.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

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무관청"은 "관리

권자"로 본다.

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】

제37조의2 (관리업무의 위탁) ①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